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51803(본소), 2021나51810(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256390(본소), 2020
가단267112(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7,666,5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9,15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¹⁾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1)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인신청

등 추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비율만 달리할 뿐 제1심이나 당심에서 제출한 반소장,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부터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증인신문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여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